

#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(김재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28.

발 의 의 원 : 김재우 의원

김지만 의원

윤기배 의원

이시복 의원

이영애 의원

전경원 의원

황순자 의원

(이상 7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안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,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장의 책무)**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예산지원)**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,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**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**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중앙협의회"라 한다)와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, 2017. 10. 24.>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

②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,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, 인가,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6항·제7항, 제22조, 제23조제3항, 제24조,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"시·도지사"는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본다. <개정 2012. 1. 26.>

④ 중앙협의회, 시·도협의회 및 시·군·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**제42조(보조금 등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
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-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[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](#) 및 [「지방재정법」](#)을 따른다. <신설 2016. 2. 3.>  
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**제17조(각 협의회의 운영경비)**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